시화MTV 공동3 호반써밋 1차 프라임 입주자모집공고

HOBAN SUMMIT THE PRIME

■ 신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시화 MTV 공동1블록 호반써밋 1차 프라임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hobansummit-mtv2.co.kr)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자포함)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과 관련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은 사전 MTV 호반써밋 1차 프라임 홈페이지(www.hobansummit-mtv2.co.kr)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예정입니다.(방문예약 접수 방식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 특별공급 신청자 관련 인터넷 청약시점이 유리하오니, 고령자, 장애인 등 청약위격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 없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0~14:00, 관람당일 기준 / 특별공급 신청자 관람 견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 1566-6782)로 방문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자포함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과 관련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당첨자포함) 자격 확인 및 당첨계약체결 시 대리인 입장이 불가하오니 당첨자 및 계약 체결자분께서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사전예약시는 시간당 70명(30팀), 1일 최대 인원 490명으로 한정하며, 관람시간은 당일 30분으로 제한하여 교외로 관람객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마스크착용 추수적용
- 견본주택 방문 시 마스크착용을 추수적용 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및 비닐장갑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해 체온이 37.5℃ 이상 측정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장비를 준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화 프라임 견본주택 및 주변 교통혼잡 방지 안내
- 견본주택 입장 시 1호차 이상 주차 불가하오니 주차장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입장 및 퇴장 시 교통혼잡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주변 도로에 주정차 금지 및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내방객 제한 및 사전관람예약 신청 안내
- 본 견본 주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방침 등에 따라 원활한 당첨자 관리 및 계약 진행을 위하여 일일 내방객을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견본주택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당첨자 관련 현장 발표일 당일에 한하여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예약 시간제로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관람 전 일 청약 계약 시 당첨자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시 사이트 접속 폭주 시 접속지연 및 예약 불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견본주택 관람 예약제 운영 안내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관련 문의 및 예약 관련 문의 : 1566-6782
- 견본주택 관람 예약 : 홈페이지(www.hobansummit-mtv2.co.kr) 또는 ARS(1566-6782)를 통한 예약 가능
- 견본주택 관람 시간 : 10:00 ~ 14:00 (관람당일 기준 / 특별공급 신청자 관람 견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 1566-6782)로 방문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관람 인원 : 시간당 70명(30팀), 1일 최대 인원 490명으로 한정하여 교외로 관람객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 시 마스크 착용 추수적용 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및 비닐장갑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해 체온이 37.5℃ 이상 측정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장비를 준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화 프라임 견본주택 및 주변 교통혼잡 방지 안내
- 견본주택 입장 시 1호차 이상 주차 불가하오니 주차장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입장 및 퇴장 시 교통혼잡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주변 도로에 주정차 금지 및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층과급 면적	기본추천	선호부부	노부모부양	계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세대수	입주예정일
민영주택	2020000968-01	01	59.7925A	59A	59.7925	22.6805	82.4730	45.2159	127.6889	40.6747	204	20	40	20	6	86	118	8	2023년 02월
	2020000968-02	02	59.5893B	59B	59.5893	22.5051	82.0944	45.0622	127.5331	40.5367	197	19	39	19	5	82	115	7	
	2020000968-03	03	74.896A	74	74.896A	27.1116	102.0062	56.6363	158.6425	50.9481	213	21	42	21	6	90	123	8	
	2020000968-04	04	84.7402	84	84.7402	30.0946	114.7448	64.0817	178.8265	57.6457	212	22	42	21	6	91	121	8	
합 계											826	82	163	81	23	349	477	3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선택)

주택형	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	2회	2021-01-15	2021-06-15	2021-11-15	2022-03-15	2022-06-15	2022-09-15	입주지정일
59.7925A	59A	204	1층	87,895,000	184,285,000	18,428,500	16,718,000	26,718,000	26,718,000	26,718,000	26,718,000	26,718,000	26,718,000	80,154,000	2023년 02월
			2층	82,895,000	190,025,000	272,920,000	19,000,000	17,292,000	27,292,000	27,292,000	27,292,000	27,292,000	27,292,000	81,876,000	
			3층	82,895,000	195,765,000	278,660,000	19,500,000	17,866,000	27,866,000	27,866,000	27,866,000	27,866,000	27,866,000	83,598,000	
			4층	82,895,000	201,755,000	284,650,000	20,100,000	18,465,000	28,465,000	28,465,000	28,465,000	28,465,000	28,465,000	85,395,000	
			7~8층	173	82,895,000	207,495,000	290,390,000	19,039,000	29,039,000	29,039,000	29,039,000	29,039,000	29,039,000	87,117,000	
			9층	173	82,613,000	190,807,000	273,420,000	19,000,000	17,342,000	27,342,000	27,342,000	27,342,000	27,342,000	82,026,000	
			10층	173	82,613,000	196,797,000	279,410,000	19,000,000	17,941,000	27,941,000	27,941,000	27,941,000	27,941,000	83,823,000	
			11층	173	82,613,000	202,537,000	285,150,000	19,000,000	18,515,000	28,515,000	28,515,000	28,515,000	28,515,000	85,545,000	
			12층	173	82,613,000	208,277,000	290,890,000	19,000,000	19,089,000	29,089,000	29,089,000	29,089,000	29,089,000	87,267,000	
59.5893B	59B	197	2층	8	103,832,000	240,818,000	344,650,000	24,465,000	34,465,000	34,465,000	34,465,000	34,465,000	34,465,000	103,395,000	
			3층	8	103,832,000	248,228,000	352,060,000	25,206,000	35,206,000	35,206,000	35,206,000	35,206,000	35,206,000	105,618,000	
			4층	8	103,832,000	255,628,000	359,460,000	25,946,000	35,946,000	35,946,000	35,946,000	35,946,000	35,946,000	107,838,000	
			6~8층	189	103,832,000	263,028,000	366,860,000	26,687,000	36,687,000	36,687,000	36,687,000	36,687,000	36,687,000	110,061,000	
74.896A	74	213	1층	1	117,482,000	251,128,000	368,610,000	26,861,000	36,861,000	36,861,000	36,861,000	36,861,000	36,861,000	110,583,000	
			2층	8	117,482,000	259,108,000	376,590,000	27,659,000	37,659,000	37,659,000	37,659,000	37,659,000	37,659,000	112,977,000	
			3층	8	117,482,000	267,088,000	384,570,000	28,457,000	38,457,000	38,457,000	38,457,000	38,457,000	38,457,000	115,371,000	
			4층	8	117,482,000	275,078,000	392,560,000	29,256,000	39,256,000	39,256,000	39,256,000	39,256,000	39,256,000	117,768,000	
			7~8층	182	117,482,000	283,058,000	400,540,000	30,054,000	40,054,000	40,054,000	40,054,000	40,054,000	40,054,000	120,267,000	

※ 주택 공급 세대수 표기 시 「주택법 및 동 「시행령」 상 주택법(국민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세대수 산정 방법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택으로 건설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단지(주택단지 안의 주택 일부 동을 기준으로 하여 5층 이상인 경우 포함)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단지 안의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대수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소형주택 건설비율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 :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대수 이상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16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포함)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3억 5,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공급방법 :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 후 미달 시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 공급
- 공급물량 : 163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첨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16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포함)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3억 5,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공급방법 :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 후 미달 시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 공급
- 공급물량 : 163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첨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적용	• 한국감정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디지니톰랜드, 신분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중 추첨제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무작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입주자 선정 순위가 결정되며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료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 별로 한국감정원 프로그램에 의해 입주자 선정 순위가 결정되며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동·호수를 결정합니다.(주택형별 적용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 이하인 주택형은 경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 선정 순위가 결정되며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 동별 추첨장치 구분 없이 1순위 전체(2,059명)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 선정 순위가 결정되며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추첨장치별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에 청약통장 순위(가입일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동·호수를 결정합니다.(예비입주자 순위 및 동·호수 결정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제3자 대리인 신청자 주의사항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에 청약통장 순위(가입일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에 청약통장 순위(가입일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유의사항
- 청약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청약접수 시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에 청약통장 순위(가입일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복 청약 접수 불가 : 청약통장 1개로 2개 이상 청약 접수 불가 (중복 청약 접수 시 전부 무효)
- 청약접수처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당첨자로 동시에 선정될 수 있으며,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1순위 청약 기능이 상실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16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포함)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3억 5,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공급방법 :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 후 미달 시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 공급
- 공급물량 : 163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첨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8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자로 지니 3개월이내 포함 이상을 본 주택의 주택소재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오니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후 미달 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
- 공급물량 : 81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첨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8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자로 지니 3개월이내 포함 이상을 본 주택의 주택소재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오니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후 미달 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
- 공급물량 : 81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첨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8.24(월) (청약예금 : 08:3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 견본주택 방문 청약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자에 한함	신청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전 은행 기입지 • 사업주체 견본주택(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자에 한함)
	1순위	2020.08.25(화) 08:30~17:30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하실 경우 해당 앱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 시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에 청약통장 순위(가입일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복 청약 접수 불가 : 청약통장 1개로 2개 이상 청약 접수 불가 (중복 청약 접수 시 전부 무효)
- 청약접수처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당첨자로 동시에 선정될 수 있으며,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1순위 청약 기능이 상실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8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자로 지니 3개월이내 포함 이상을 본 주택의 주택소재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오니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후 미달 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
- 공급물량 : 81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첨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8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자로 지니 3개월이내 포함 이상을 본 주택의 주택소재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오니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후 미달 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
- 공급물량 : 81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첨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8.24(월) (청약예금 : 08:3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신청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전 은행 기입지 • 사업주체 견본주택(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자에 한함)
	1순위	2020.08.25(화) 08:30~17:30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하실 경우 해당 앱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 시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에 청약통장 순위(가입일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복 청약 접수 불가 : 청약통장 1개로 2개 이상 청약 접수 불가 (중복 청약 접수 시 전부 무효)
- 청약접수처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당첨자로 동시에 선정될 수 있으며,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1순위 청약 기능이 상실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8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자로 지니 3개월이내 포함 이상을 본 주택의 주택소재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오니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후 미달 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
- 공급물량 : 81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첨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8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자로 지니 3개월이내 포함 이상을 본 주택의 주택소재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오니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후 미달 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
- 공급물량 : 81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첨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6개월 경과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www.applyhome.co.kr)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8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자로 지니 3개월이내 포함 이상을 본 주택의 주택소재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오니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범위에서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후 미달 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
- 공급물량 : 81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첨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 충족 여부에